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건 설 국
공정건설정책과

《 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 제안 》



①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건의단체	道 정책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 도로사업과 부대사업(주택, 산단, 생활SOC 등)을 연계한 개발방식 추진
 - 세수감소 및 복지 분야 재정수요 증대로 인해 도로분야 예산 감소함에 따라 SOC 분야 신규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 발굴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주도(도+시군) 복합개발방식의 민자도로사업 발굴
 - ☞ 지방도 조기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②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건의단체	”
	담당부서	하천과

- 하천정비 정책 및 예산을 정부→道 이양으로 ‘경기도형 혁신적인 하천정비’ 방안 필요
 - 깨끗한 물이 ‘늘’흐르는 지방하천 ☞ 물순환 적용으로 건천화 방지, 오폐수 제거, 관로 개선공사 등
 -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 하천디자인 공모사업 통해 도민 참여
 - 도시개발과 함께 ‘풍요로운 하천’ 제공 ☞ 도시개발 인허가시 하천정비사업 의무검토
 - 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 ☞ 도로, 상하수, 환경, 재난 등 여러부서 협의로 종합적 사업 추진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건의단체	”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 종합건설사(주계약자)와 전문건설사(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입찰 참가하여 동등한 지위(공동계약자)로 공사 추진 (추정가격 2억원 ~ 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 불공정 거래 감소
 - 전문건설사 책임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 공사품질 향상, 이윤적정 배분
 -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구성 ☞ 건설공사 실시설계 중 공동도급 사전 검토

④ 전자카드제 도입 통한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추진	건의단체	”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 전자카드제 도입(‘19년)으로 道(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30개) 대상 확대 추진
 - 불법외국인 고용방지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제한 ☞ 건설일자리 보호, 적정임금 보장
 - 전자카드 출퇴근 내역과 노무비 청구내역 비교검증으로 투명성 강화 ☞ 노무비 지급 부조리 예방
 - 근로일수 누락 방지를 위해 전자기록을 근거로 퇴직금제 신고 ☞ 명확한 퇴직금 지급 근거 마련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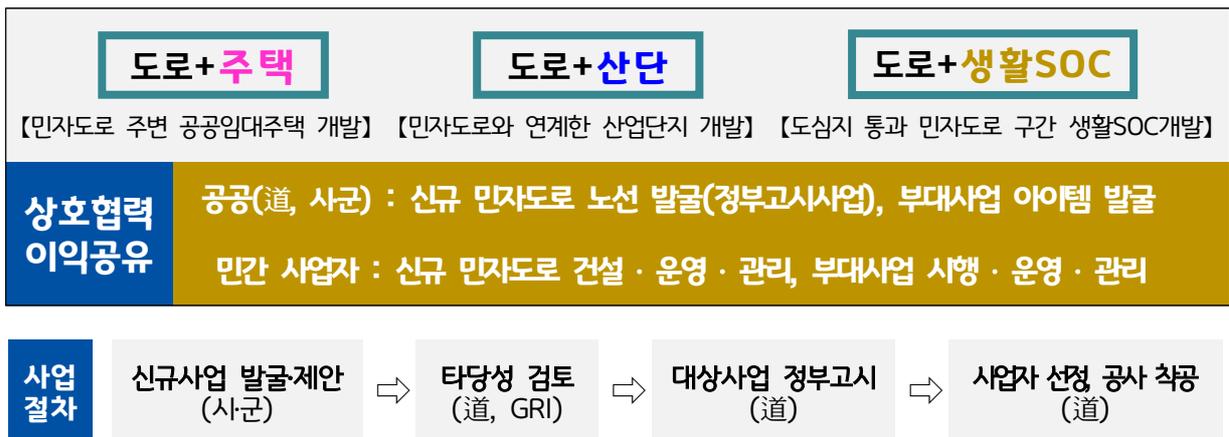
- (정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충격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SOC 분야 신규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 발굴 추진
- (道) 세수감소 및 복지 분야 재정수요 증대로 인해 도로분야 예산 지속 감소

▶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주도(도+사군) 복합개발* 방식 민자도로사업**
 발굴을 통해 지방도 조기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도로사업과 부대사업(주택, 산단, 생활SOC 등)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개발방식

□ 추진방향 (민자도로복합개발→개발이익창출[道·民]→개발이익환수[道])

- 전국 최초 공공주도 복합개발(민자도로+부대사업) 방식의 **신규 민자도로 사업 발굴**



□ 추진대상

- 신설이 필요한 지방도(국지도) 노선 중(서비스수준 : 설계속도 90km/h 고속화도로)
- 급격한 도시(택지) 개발, 상습정체 구간, 간선도로간 단절 도로 등

□ 추진계획

- ‘20년 하반기 : (민자)도로복합사업 발굴·제안 요청(道→사군)
- ‘21년 상반기 :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대상 확정

《 정부고시 사업 》



《 민간제안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명 :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사업목적 : 개발이익을 활용한 석수골 역사 건립 재원 마련 및 교통수요 창출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73-1번지 일원
- 부지면적/지역지구 : 73,298㎡(22,172평) /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용적률 : 16.34% / 443.76%
- 건축규모 : 아파트 1,600세대(지하4층~지상47층), 오피스텔 440실(지상23층)
- 사업비 : 4,000억원(용지비 + 건축비)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법적근거 : 민투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1항4호]
- 사업시행자 : 이레일주식회사(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 추진현황

- '12. 3.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 제출[이레일(주)→안산시]
- '14.10. :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15. 6.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18. 6. : 서해선(소사~원시선) 개통
- '18. 8. :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 및 입주

□ 위치도 및 조감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4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20년부터 하천정비 정책 및 예산이 경기도로 이양됨에 따라 도민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하천정비 방안 필요
 - 그 동안 하천정비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재해예방(하천폭 및 재방 확장) 목적으로 제한

□ 하천현황

- 치수 위주의 하천 폭 확장으로 건천화 유발 및 평시 수질 악화 발생
(사례) 하천 수심 감소(갈수위 15cm→10cm)로 수질 악화('08. BOD 3mg/l → '18. BOD 5mg/l)



- 단순 제방 위주 하천 정비로 하천변 자전거도로, 수변 공원 등 도민 이용 시설 부족
-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하천과 연계된 개발계획 수립 미흡
- 하천 정비사업 후, 타 공사(하수관로 등)로 인한 중복투자 우려

□ 추진방향

①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하천 만들기

- 인접 하수처리장 방류수 또는 저수지 용수 활용한 물순환 구조로 건천화 예방
- 악취제거를 위한 오너터 제거, 오염원 차단 관로공사 등 수질개선 중점 추진
- 하천감시원, 계곡지킴이 활용 유수 저해 및 악취 유입 감사·신고 강화

② 도민 공감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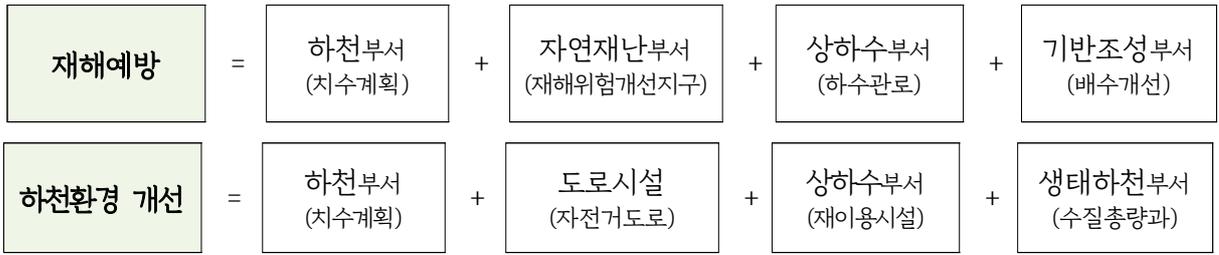
- 도민의 ‘하천디자인 참여’, 공모사업을 통한 주변지역 시너지 효과 극대화

③ 각종 도시개발과 함께 ‘풍요로운 하천’ 제공

- 도시개발시 인허가시 하천정비사업 의무검토, 기능상실한 저수지, 보 등 이수시설 전환 검토

④ 동일 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로 예산 절감

- 하천과, 자연재난과, 상하수과, 친환경농업과, 도로안전과, 수질총량과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하천 사업 시 친수, 수량, 수질개선 등 사업 병행추진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하천 사업과 병행 시공토록 자전거도로, 변치 설치 등 지원 항목 규정

□ 추진계획

①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 ☞ 건천화 방지

2020년 시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흥 신천 건천화 방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로연장 D300mm, L=1.0km(공급량 1.67m³/s) ※ 既 팔당원수 분기관로 매설 - '20. 8. ~ '20. 12. / 1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군포 반월천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포시」 약53억 부담(취수가압 등) / 「경기도」 약11억 부담(분류 관로매설)

②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공모사업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색과 도시계획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시·군 공모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수요자인 지역주민 외부 위원 선정으로 ‘하천 디자인’에 직접 참여 ※ 공모사업 결과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상위순위 반영 추진 · 실시설계 시 민·관·학 협의체 구성으로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	---

③ 도시개발과 함께 ‘풍요로운 하천’ 제공

도시계획 협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기 신도시 조성 T/F 참여로 도시개발 시기에 맞춘 지방하천 연계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낙생지구의 동막천 등 3기 신도시(19개)와 연계된 12개 지방하천 적기 추진 · 하천기본계획 변경 시 유지용수 확보 방안, 기능 상실 시설물 활용방안 검토
-------------	---	--

④ 하천 내 ‘중복사업 방지’

하천 관련 사업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전 중복사업 방지 및 정책 효과 확대를 위한 관련부서 사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배수개선사업, 상하수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담당부서
----------------	---	--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하도급의 의존적 생산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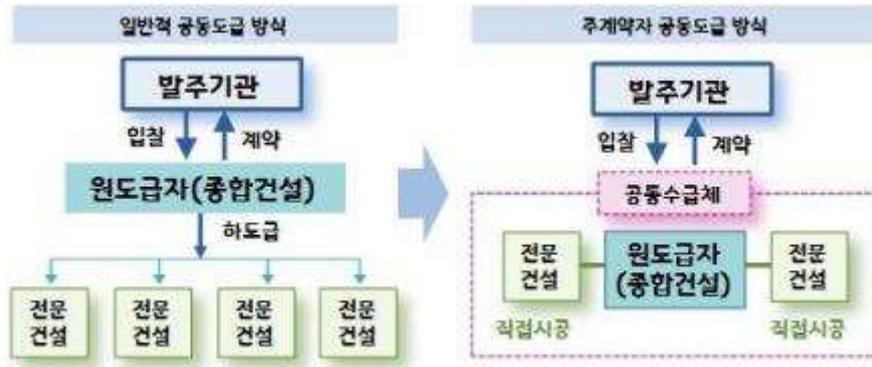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요

○ (방식) 종합건설사(주계약자)와 전문건설사(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입찰 참가, 동등한 지위(공동계약자)로 공사 수행

▶ (주계약자) 전체공사 기획, 관리, 조정, (부계약자) 전문공사 전담 시공 및 하자 책임

○ (대상) 추정가격 2억원 ~ 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 (제외대상) 긴급공사, 공정분리 불가, 하자 책임 불명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순수 전문공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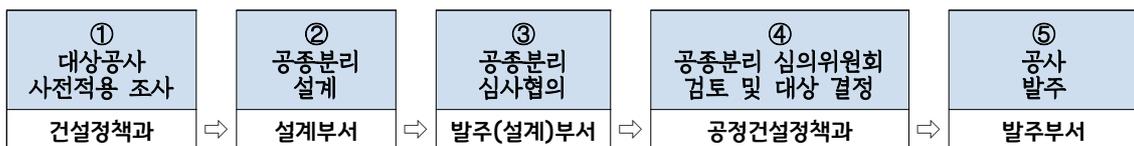


①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 불공정 거래 감소

② 전문건설사 책임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 공사품질 향상, 이윤적정 배분

□ 추진방안 (건설정책과 총괄 검토 → 발주부서 사업 실시)

○ (방법)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검토 의무화(건설정책과 총괄시행)
 - 매년 초 도내 발주 대상공사(산하기관 포함) 사전 조사 실시(발주부서 의견취합 등)
 - 대상공사의 설계 준공 전 공종분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여부 결정(공정건설정책과)
 -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반드시 건설정책과 협의 후 입찰공고(회계과 등 계약부서)



○ (시기) ‘20년 하반기 시범 실시(14개 공사) → ‘21년 도내 대상 공사 전면 적용

□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명 :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 위원구성 : 당연직 및 공정별 전문가 인력풀 (약75명)구성
 - (내부위원) 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개발팀장
 - (외부위원) 설계·시공 경험이 있는 공종별 전문가
- 개최시기 : 실시설계 준공 전·후
- 주요 심의 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 구분이 명확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비율 확인 (공동수급사 5개 이하, 최소분담률 5% 이상)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산정 확인

□ 추진계획

-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위원 인력풀 구성 : '20. 10월중
 - 인력풀은 건설업 관련 협회 및 기관 추천을 받아 선정
- '20년 추진실적 점검 및 '21년 대상사업 파악 : '20. 12월중

일자	주요내용	비 고
1999. 4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근거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999. 8.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도급 지도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 장관 •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협력관계 우수업체평가 근거마련 시공능력 평가 실적 6%, 최고 PQ - 4점 	
1999. 9.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계약자 시공실적의 100%를 주계약자 실적으로 인정 • 일반 간의 공동도급 시는 시공실적의 50%만 인정 의무 하도급 비율을 공동도급으로 대체 	
2000. 4.	○ 건설교통부에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운영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사는 동 규정 적용 국가공사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우선 적용 	
2005. 12.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근거 마련 「지방계약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제정시행 	
2009. 2. ~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 시행 (16 개 지자체)	
2010. 1.	○ 지자체 발주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전면시행 행정자치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4년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이며, 계속해서 제도 활용이 미약하자 1999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는 PQ심사 제도보완 등 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나서게 되었음.
- 또한 2005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대와 사회적인 분위기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제도 도입은 늦어지다가 지난 2009년에 본격적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2010년에 행정자치부가 전면적인 시행을 시작하게 되었음.
- 그럼에도 최근까지 전체적으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 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0조의2(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① 도지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
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배경

-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에 따른 일자리 및 소득 감소,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 축소 신고 등 건설현장 부조리 개선 필요
 -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일자리위원회·정부합동, 2017.12.)

□ 사업개요

- (적용대상) 道 및 산하기관 발주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공사
- (추진방향)
 - 불법외국인 고용방지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제한(가능비자: F-2/5/6, H-2, E-9)
 - 전자카드 출퇴근 내역과 노무비 청구내역 비교검증으로 투명성 강화
 - 근로일수 누락 방지를 위해 전자기록을 근거로 퇴직공제 신고

□ 추진경과

- (2019. 8.)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경기도⇔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
- (2019. 9.) 4개 분야별 대표사업 시범 적용(전자카드 출퇴근 등록율 99%)

(건설국) 방림천 개선사업	(건설본부-도로) 가남-상수 도로확포장	(철도국-철도) 별내선 복선전철4공구	(건설본부/경기도시공사-건축) 도 신청사 건립
-------------------	--------------------------	-------------------------	------------------------------

- (2019. 12. 20.) 관련 조례 개정으로 확대 추진 근거 마련
 -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2020년 추진계획

- (확대적용) 道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장(발주예정 9, 기착공 21)
 - 입찰공고문에 전자카드제 사업임을 명시, 소요비용 원가 반영
- (운영관리) 실 출역인원 대비 전자카드 태그율 모니터링 및 현장 계도
 - 노무비 청구내역 작성 시 전자카드 출역내역 비교자료 제공
 - 공공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2020. 11.) 대비 주기적인 홍보·교육 등 전자카드 태그율 제고 방안 마련 추진

□ 기대효과

-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 방지로 건설일자리 보호, 적정임금 보장
- 전자기록에 근거한 노무비 지급관리로 부조리 예방 및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 실무협의 심의 선정 7개 안건 》

⑤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	건의단체	대한건설협회
	담당부서	회계과
○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 상향(100억원 → 150억원)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행안부)		
⑥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 강화	건의단체	“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 수사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에 행정력 집중 요망 ※ 건설협회의 관련 조사 경험('12~'18, 551명 적발) 공유 및 협업		
⑦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	건의단체	대한전문건설협회
	담당부서	회계과
○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전문 1,500만원, 종합 5,000만원)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토록 제도개선 건의(국토교통부)		
⑧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추진	건의단체	“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 아파트 유지관리공사(도장, 방수 등)의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우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⑨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건의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 지역업체 참여 및 공동수급 유도		
⑩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건의단체	道 정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정책과
○ 도 기술학교, 민간위탁을 통해 건설기능인력 양성 (1,400명, 조적,목공등 12개 직종) ○ 호주 취업 전문과정 운영, 씬터버스(취업상담) 및 채용박람회 개최		
⑪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확대·강화 추진	건의단체	“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 사전단속 성과 공유 및 시·군 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시·군까지 확대 ○ 적발업체 처분 강화 (입찰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입찰보증금 환수)		